

## 【 12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7. 5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1. 개정이유

- 토지 ·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와 빈 건물,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청결의무 책임을 부여하고 청결유지 조치 명령 대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 폐기물 처리업체의 증가로 이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이 우려됨은 물론 업체간 과다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등으로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허가처리를 할 수 있는 입지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토지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청결유지의무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함(안 제6조)
-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양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제정 ·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1장, 제14조 및 제15조)
- 라. 폐기물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2조)

## 양주군조례 제 1호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빛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지역자원에관한법률”을 삭제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 토목,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청결유지의 책무 및 이행)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④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놓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또는 노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주군폐기물관리과 대표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제한)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의 적합여부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 중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한다.

제3장,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하고, 제4장을 제3장으로 제16조 내지 제20조를 제11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12조 중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양주군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자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 토석,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신설〉</p>	<p>제1조(목적) -----</p> <p>-----</p> <p>-----</p> <p>-----</p> <p>-----</p> <p>-----</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 토목,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4조(청결유지의 책무 및 이행)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청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봄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다면,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봄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현 행	개 정 안
	<p>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행위</p> <p>2. 토지·건물에 쓰레기 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손하는 행위</p> <p>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또는 노천소각하는 행위</p> <p>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주군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에 의한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종합 여야 한다.</p> <p>제6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제한)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여부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지정) (생략)	제7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 지정)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생략)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생략)	제9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② (생략) ③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④(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④(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u>제15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u>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u>&lt;삭 제&gt;</u>
<u>제4장 보칙</u> <u>제16조(업무위탁등)</u> 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3장 보칙</u> <u>제12조(업무위탁등)</u> ----- ---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u>제17조(행위의판) (생략)</u> <u>제19조(권한의 의임) (생략)</u>	<u>제13조(행위위탁)(현행 제17조와 같음)</u> <u>제14조(권한의 위임)(현행 제19조와 같음)</u>
<u>제20조(규칙)</u> : 등	<u>제15조(규칙)</u> (현행 제20조와 같음)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토지·건물에 쓰레기물 석적 또는 방치하는 행위와 민 건물, 광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청결의무 위반을 부여하고 청결유지 조치 명령 대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증가로 이를 위해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로 인한 주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물품 업체간 과나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 등으로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어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적이고 합리적으로 허가처리를 할 수 있는 입지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청결유지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양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3장, 제14조 및 제15조)
- 라. 폐기물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2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26조, 제58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0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2002.4.8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현행조례(전문)**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계획 관련근거 공문 사본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관련근거 공문 사본